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목 차

< 일 반 회 계 >

○ 기술개발국	1
○ 농촌지원국	25
○ 연구소 및 관리소	71

기 술 개 발 국

기술개발국

1. 농업기술개발 지원
(충남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5
2. 농업기술개발 지원(평가회, 세미나 개최) 7
3. 연구개발 실용화(외빈초청여비) 9
4. 연구개발 실용화(국제공동연구) 12
5.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모델 개발 사업 ... 15
6.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9
7.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1

농업기술개발 지원 (충남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정책사업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개발
	세부사업	농업기술개발 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3농정책, FTA 및 기후변화 등 농업생산 환경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결과 기술보급 및 홍보 확산을 목적으로 연구사업 결과를 실수혜자(농업인, 지도사)에게 실용화 영농기술 적용 촉진코자 함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 사업 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비 0)
 - ※ 중감 사유 : 코로나 19로 인한 성과보고회 개최 취소
- 사업 량 : 충남농촌진흥사업 연구결과 성과보고회 1회 운영
 - 충남농촌진흥사업 시험연구사업 우수 연구결과 성과보고회 개최
 - 신품종 육성 결과물 홍보 및 영농활용 자료 홍보 전시
 - 충남 15개 시군 농촌지도사업 우수사례 발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지사 공약사업(현장중심 문제해결 기술개발 및 보급)

농촌진흥법 제2조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행사운영비 운영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8,100	0	△8,100	0	계속
국 비							
도 비	0	0	8,100	0	△8,1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100	8,100	0	10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이동재 (행) 6040	윤덕상 (행) 6041	김수동 (행) 6042

농업기술개발 지원 (평가회, 세미나 개최)	정책사업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개발
	세부사업	농업기술개발 지원
	통 계 목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ICT융복합, FTA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생산 환경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험연구사업 설계, 중간진도 및 결과 평가 등 심의회 운영과 세미나 개최 등으로 농가 현장에 실용화 영농기술 적용 촉진코자 함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 사업 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비 0)**
 - ※ 증감 사유 :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평가로 변경 및 세미나 개최 취소
- 사 업 량 : 충남농촌진흥사업 시험연구사업 설계, 중간진도 및 결과 평가 등 심의회 운영 5회
- 시험연구사업 설계, 중간진도 및 결과 평가 등 심의회 운영과 세미나 개최 등 5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지사 공약사업(현장중심 문제해결 기술개발 및 보급)

농촌진흥법 제2조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업기술개발지원 행사실비지원금 ○ 행사실비지원금 운영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1,620	0	△1,620	0	계속
국 비							
도 비	0	0	1,620	0	△1,62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20	1,573	47	97.1%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이동재 (행) 6040	윤덕상 (행) 6041	김수동 (행) 6042

연구개발 실용화 (외빈초청여비)	정책사업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개발
	세부사업	연구개발 실용화
	통 계 목	외빈초청여비(301-07)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MOU 체결한 해외 기관과의 합의된 농업기술 교류협력 추진, 그리고 해외 선진 농업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FTA 대응 등 글로벌 농업현안 신속 대처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으로 충남 농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 사업 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비 0)**

※ 증감 사유 : 코로나 19로 인한 외빈초청 취소

- 사 업 량 : 충남농촌진흥사업 증진 위한 국제 MOU체결 및 선진연구기관 해외 전문가 초청 5회
- 국제 MOU체결 및 선진연구기관 해외 전문가 초청 등 교류협력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지사 공약사업(현장중심 문제해결 기술개발 및 보급)

농촌진흥법 제2조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연구개발실용화 외빈초청여비 ○ 외빈초청여비 운영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8,100	0	△8,100	0	계속
국 비							
도 비	0	0	8,100	0	△8,1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100	7,665	435	94.6%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이동재 (행) 6040	윤덕상 (행) 6041	원미경 (행) 6043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해외전문가 초청사업」 취소 계획

1. 관련: 코로나 19 역류입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2020.04.01.),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2020.04.09.), 작물연구과-133(2020.01.09.)호.

2. 코로나-19의 장기화 추세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및 방역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전문가 상호 교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해외전문가 초청사업」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비 : 8,100천원

나. 예산과목 :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연구개발 실용화-외빈초청여비(301-07)

다. 향후계획 : 정리추경 반납 예정. 끝.

주무관 원미경 팀장 윤덕상 작물연구과장 이동재 기술개발국장 박인희 전결 2020. 9. 15.

협조자 주무관 안정호

시행 작물연구과-4675 접수

우 324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http://www.chungnam.go.kr>
작물연구과

전화번호 041-635-6043 팩스번호 041-635-7921 / wmk1117@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연구개발 실용화 (국제공동연구)	정책사업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개발
	세부사업	연구개발 실용화
	통 계 목	국외경상이전(310-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대학 등과 공동으로 국내농업기술의 개발촉진과 선진기술 및 유용유전자원을 조기 도입하고, 국내 기술로는 단독개발이 곤란하거나 외국과 상호 보완 연구가 필요한 농업기술의 개발 및 외국의 첨단농업기술 또는 농업자원의 국내 도입 활용과 연구원의 기술연수를 통한 국내의 연구 역량 배양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 사업 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비 0)**
※ 증감 사유 :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공동연구 취소
- 사 업 량 : 국제공동연구과제 1과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지사 공약사업(3농정책을 위한 동북아 농업기술교류 사업 추진)

농촌진흥법 제2조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 ○ 현지 인건비 : 0천원 ○ 현지 재료비 : 0천원 ○ 현지 여비 : 0천원 ○ 간접비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20,000	0	△20,000	0	계속
국 비							
도 비	0	0	2,0,000	0	△2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	20,000	0	10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이동재 (행) 6040	윤덕상 (행) 6041	김수동 (행) 6042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 취소 계획

1. 관련 : 코로나 19 역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2020.04.01.),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2020.04.09.).

2. 코로나-19의 장기화 추세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및 방역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추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비 : 20,000천원

나. 예산과목 :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
-연구개발 실용화-국외경상이전(310-01)

다. 향후계획 : 정리추경 반납 예정. 끝.

지방농업연구사 김수동 팀장 윤덕상 작물연구과장 이동재 기술개발국장 박인희
협조자 주무관 안정호

시행 작물연구과-4681 접수

우 324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6042 팩스번호 041-635-7921 / ksd4673@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정책사업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세부사업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사업
	통 계 목	인건비(101-04) 사무관리비(201-01) 국내여비(202-01) 시험연구비(207-03) 기타보상금(301-1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작물 재배 환경 및 생육 데이터 생산·수집을 위한 데이터조사요원 채용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 사업 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 예 산 액 : 1,131,330천원(국비 565,665, 도비 565,665)
- ※ 정부 3차 추경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업 선정(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포함)
- 사 업 량
 - 시설 작물 : 딸기(13농가), 방울토마토(12농가), 오이(4농가)
 - 노지 채소 : 고추(6농가), 배추(6농가)
 - 축 산 : 한우(2농가), 양돈(8농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사업 내용
 - 시설원예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을 위한 생육·환경데이터 수집
 - 노지분야 생산성 향상 및 수확량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 축산분야 생산성 향상 빅데이터 수집
- * 축산데이터 : 가축 이미지 및 무게 실측으로 자동체중 AI 개발 활용수집·구축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농촌진흥법 제2조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 조성과 자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 824,750천원 ○ 인건비: 576,540천원 · 기존: 1,863천원×8개월×10명=149,040천원, 추경 : 1,900천원×5개월×45명=427,500천원 ○ 4대 보험료 : 85,100천원 · 기존: 280,000원×8개월×10명=22,400천원, 추경: 278.67천원×5개월×45명=62,700천원 ○ 급량비 및 교통비 : 54,900천원 · 기존: 180,000원×8개월×10명=14,400천원, 추경: 180,000원×5개월×45명=40,500천원 ○ 상여금 : 26,000천원 · 기존: 800천원×10명=8,000천원 추경: 400천원×45명=18,000천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 17,500천원 · 기존: 50천원×8개월×10명=4,000천원, 추경: 50천원×5개월×45명=13,500천원 ○ 업무추진 여비 : 64,710천원 · 기존: 50천원×50회×10명=30,960천원, 추경: 50천원×15회×45명=33,750천원 ■ 사무관리비 : 17,200천원 ○ 컴퓨터 임차 : 8,000천원 · 80천원×20대×5개월=8,000천원 ○ 사무용품 : 7,400천원 · 37종×25개×8천원=7,400천원 ○ 감사비 : 800천원 · 4명×200천원=800천원 ○ 교재비 : 1,000천원 · 50부×20천원=1,000천원 ■ 국내여비 : 8,450천원 · 65천원×2명×65회=8,450천원 ■ 시험연구비 : 134,930천원 · 방제 및 검역복 : 55천원×50명×10개월=27,500천원 · 영상 데이터 취득 센서 : 4,000천원×10대=40,000천원 · 기상 및 내부환경 측정 센서 등 : 200천원×20종×10세트=40,000천원 · 각종 농자재 및 농약 : 137,150원×20종×10개=27,430천원 ■ 기타보상금(농가사례비) : 138,000천원 · 시설채소: 3농가×10명×4회(월)×8개월×39,590원=38,000천원 · 축산 : 40명×40천원×3일×20주=96,000천원 · 노지채소 : 5명×40천원×1일×20주=4,000천원 ■ 자산취득비 : 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131,330	0	294,050	1,131,330	837,280	0	
국 비	565,665		147,025	565,665	418,640		
도 비	565,665		147,025	565,665	418,64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447,250	434,473	12,777	97.1%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원예연구과	스마트농업팀	서정학 (행) 6070	황수연 (행) 6071	박종원 (행) 6074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세부사업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통 계 목	공공운영비(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농업기술원 전산실
- 사업 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 예 산 액 : 83,993천원(도비 83,993)
- ※ 중감 사유 : 2020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낙찰차액(5,599천원) 반납
- 사 업 량 :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농업기술원내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H/W 13대, S/W 36분) 유지관리, 통신비 및 전산실 운영관리
- 지원근거 : 전자정부법 제3조 1항, 제4조 1항, 제16조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83,993천원(도비83,993) <201-02 공공운영비> ○ 시스템 통합관리 및 전용회선료 83,993천원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43,406천원 (H/W 13대, S/W 36본) ※ 기초금액 49,005천원 → 낙찰금액 43,406천원, 낙찰차액 5,599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83,993	0	89,592	83,993	△5,599	0	
국 비	0				0		
도 비	83,993		89,592	83,993	△5,599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8,521	78,521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소득경영팀	서정학 (행) 6070	장현동 (행) 6091	전인규 (행) 6094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정책사업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세부사업	농산물소득조사분석
	통 계 목	무기계약생산자보조(101-03) 기간제근로자등보조(101-04) 사무관리비(201-01) 국내여비(202-01)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별, 작목별 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 예 산 액 : **314,400천원(국비 314,400)**
 - * 보조율 : 국비 100%(정부 3차 추경으로 인한 성립전 예산 포함)
- 사 업 량 : 16개소(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시행방법 : 도 시행(1개소) 및 시군 시행(15개소)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충남 주요작목의 소득조사 : 555농가(경영기록장 기록 429농가)
 - 조사작목 재배면적에 비례한 확률비례 추출에 의거 조사 시군 및 농가 선정
 - 조사방법은 조사표에 의한 면접 청취조사와 수시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확인조사
 - 조사내용 : 생산량, 농가판매가격, 비목별 투입물량 및 비용, 작업단계별 노동력 투하시간 등 당해연도 총수입과 종자·종묘비, 농약비 등 생산비 조사
 - 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와 경영기록장 기록내용을 확인 및 검토
 - 농업경영정보시스템(AMIS)에서 농산물소득분석 프로그램에 입력, 집계 및 분석
 - 비대면 농산물소득조사 인력지원(경영기록장 기장지도 및 전산입력 자료 검토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및 농촌지도사업 실행지침,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②항의 12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 농업경영체의 소득조사·분석 및 농장경영관리기법 개발 등 경영·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 314,400천원(국비 314,400)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소득조사표 입력 및 분석 : 3,500천원×1명×12월=42,000천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소득조사 입력 및 자료정리 : 2,500천원×7명×4.5월=78,750천원 <201-01 사무관리비> ○ 사무용 가구 구입 등 : 14,490천원 <202-01 국내여비> ○ 농산물 소득조사 업무추진 : 100천원×60지역×1회=6,000천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지원 : 15시군 조사여비 및 농가 사례금 114,600천원 ○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지원 : 3시군(논산,예산,태안) 소득조사 인력지원 39,96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3회추경(B)	증감(A-B)		
계	314,400	0	181,200	314,400	133,200	0	계속
국 비	314,400		181,200	314,400	133,200		국고
도 비					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75,702	174,721	981	99.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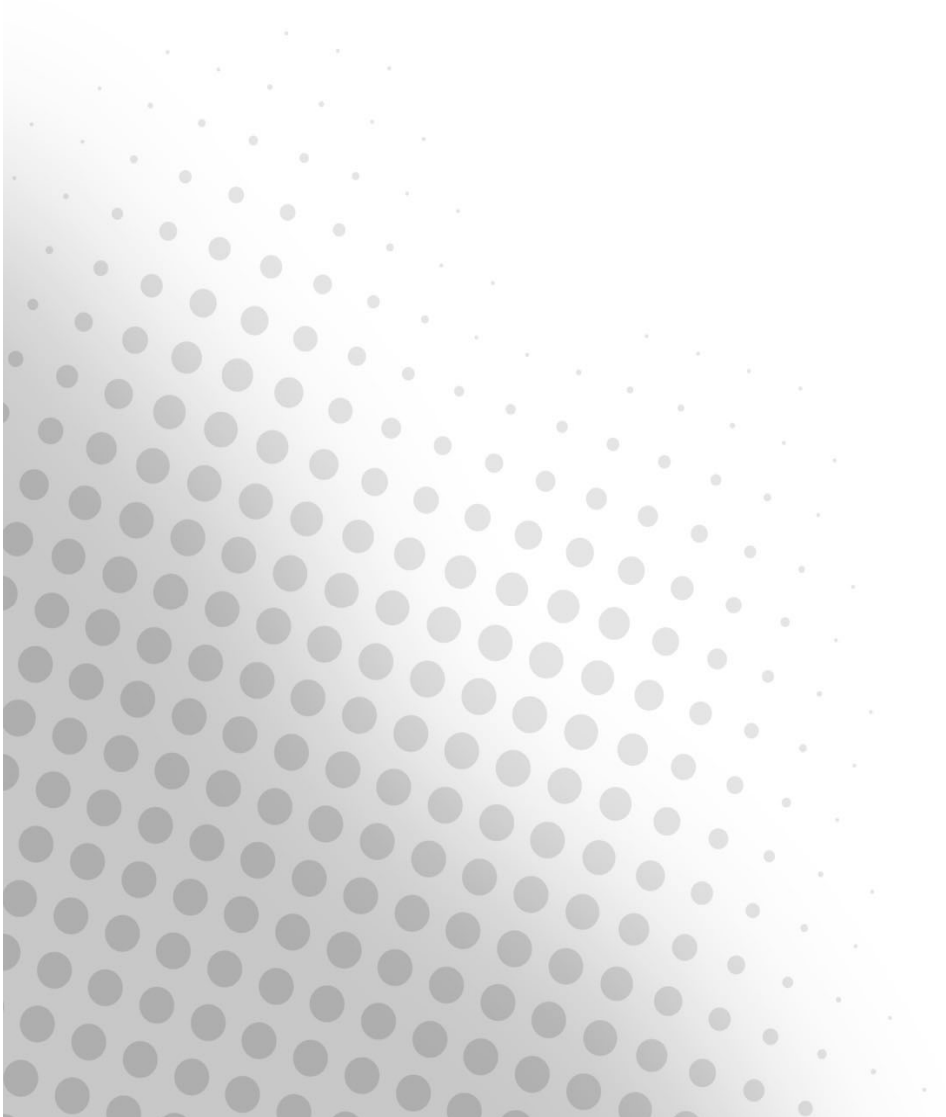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소득경영팀	서정학 (행) 6070	장현동 (행) 6091	장현동 (행) 6091

농 촌 지 원 국



농촌지원국

1. 충남농업인 학습단체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 29
2. 농촌진흥기관 공무원가족 한마음대회 31
3. 새농업기술포럼 및 농업발전 워크숍 33
4.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도,시군) 35
5.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지원 37
6. 농촌지도자 학습단체 행사 39
7.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 41
8.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단체 행사 43
9.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행사 45
10.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행사실비 47
11. 4-H 학습단체 행사 49
12.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51
13.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도운영) 53
14.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도,시군) 55
15. 충남생활원예 경진대회 및 생활원예교육 57

16. 농촌자원사업 육성지원	59
17. 충남농촌체험학습 홍보전	62
18. 해외전문가초청 첨단농업기술교육	64
19. 전문농업인교육	66
20.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교육	68

충남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성과 보고회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업기술보급사업 활성화 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 농촌진흥사업(기술개발·보급, 단체 및 인력육성 등)의 연중 분야별 활동성과 보고 및 농업인·소비자와 소통의 장 마련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행사 전면 취소
- 사 업 량 : 충남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성과보고회 1회 3,000명
- 사업시행방법 : 도직접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농촌진흥사업 관련 학습단체의 연중활동 성과 보고회 개최식 준비물 및 전시물 설치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1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

1.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성과 보고회 : 0천원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40,500	0	40,500	0	
국 비	0				0		
도 비	0		40,500	0	△40,5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0,500	40,5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이홍복 (행) 6130	박재진 (행) 6151	김슬기 (행) 6152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업기술보급사업 활성화 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시군 농촌진흥가족 간 상호소통과 화합으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행사 전면 취소
- 사 업 량 : 도기술원 및 15개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1회 500명)
- 사업시행방법 : 도직접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행사진행 무대, 음향, 텐트, 시상용품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7조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 : 0천원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13,500	0	△13,500	0	
국 비	0				0		
도 비	0		13,500	0	△13,5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900	9,9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기획홍보팀	이홍복 (행) 6130	서동철 (행) 6131	이지수 (행) 6135

새농업기술포럼 및 농업발전 워크숍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촌지도 활력화 및 전문화
	통 계 목	민간경상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진흥기관 장기 종사자(퇴직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진농업기술과 접목하여 개방화 흐름에 맞는 발전적인 농촌진흥사업 방안 제시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
- 사 업 량 : 1개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이전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
- 사업 내용 : 창안과제 발굴 벤치마킹, 기술과제 발굴 연찬, 포럼 개최 등
⇒ 과제발굴 및 선진기술 정보, 발전방안 자료 → 연구,지도업무에 활용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5조 제16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새농업기술포럼 및 농업발전 워크숍 : 0천원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9,900	0	△9,900	0	
국 비	0				0		
도 비	0		9,900	00	△9,9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720	9,72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기획홍보팀	이홍복 (행) 6130	서동철 (행) 6131	신창호 (행) 6134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도,시군)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지도공무원 국외출장)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지도공무원전문능력 향상지원(도,시군)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국내여비(202-01) 국외업무여비(202-03)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 보급·확산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기술보급 전문인력 양성
- 사업 위치 : 15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기술원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8,600천원(국비 145,100, 도비 13,500)**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해외연수 취소 및 국내 여비 반납
- 사업 량 : 15개시군 3종(역량개발교육, 전문능력개발 활동, 국외출장)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및 도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지도공무원 현장기술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연구활동 등 지원
 -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 기술보급실무 등 전문교육 → '19년 7과정 42명(농촌진흥청 주관)
 - 전문능력활동지원 : 전국단위 지도공무원간 업무분야 전문지도연구회 조직 및 과제발표 등 학습 활동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원(충남 53개회 320명)
 -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 어학훈련, 국제협력과정 등 선진농업연수 추진 → '19년 3과정 10명 추진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제20조, 「지도직공무원 전문특기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804호)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법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도) : 27,000천원 ○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사무관리비) : 2,700,000원×10회 = 27,000천원 ○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국내여비) : 0천원 ○ 농촌지도공무원 국외출장(국외업무여비) : 0천원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시군) : 131,600천원 ○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자치단체경상보조) : 87,200,000원(15시군)× 50% = 43,600천원 ○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176,000,000원(15시군)× 50% = 88,000천원 ○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자치단체경상보조)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90,200	0	340,400	290,200	△51,400	0	
국 비	145,100		170,200	145,100	△25,100		국고
도 비	13,500		23,900	13,500	△11,600		
시군비	131,600		146,300	131,600	△14,7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도,시군)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6,300	184,659	1,641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기획홍보팀	이홍복 (행) 6130	서동철 (행) 6131	이지수 (행) 6135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통 계 목	행사실비지원금(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및 농업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총괄지원 업무 효율화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2,700천원(도비 2,700)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농업인 교육 및 행사 축소
- 사 업 량 : 3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농업인 교육, 행사 등 참석자 보상금 지급
 - 도단위 품목연구회(18개회 2,800명) 교육지원, 기타 농업인 회의 및 교육·행사 참석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 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기술지원 교육(행사실비지원금) : 2,700천원 ○ 30,000원 × 30명 × 3회 = 2,7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700	0	11,700	2,700	△9,000	0	
국 비	0				0		
도 비	2,700		11,700	2,700	△9,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1,484	10,760	724	9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단체협력팀	이홍복 (6130)	허종행 (6141)	유상영 (6142)

농촌지도자회 학습단체 행사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보조 (307-04)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지도자회의 활동성과 평가와 정보 등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및 소속감 강화
 -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경영마인드 함양 등 리더양성
- 사업 위치 : 농촌지도자충청남도연합회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14,500천원(도비 14,500)**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해외연수 사업비 반납
- 사 업 량 : 1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지도자충청남도연합회
- 사업 내용 : 농촌지도자회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발굴 및 환류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1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

1.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농촌지도자회 활동성과 보고회 : 14,500천원 ○ 14,500천 원 × 1회 = 14,500천 원 ■ 농촌지도자회 해외농업기술 탐방활동 : 0천원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4,500	0	49,500	14,500	△35,000	0	
국 비	0				0		
도 비	14,500		49,500	14,500	△3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2,250	52,25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단체협력팀	이홍복 (6130)	허종행 (6141)	유상영 (6142)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운영비(2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촌지도자회 역할과 발전방향 모색
- 충남 농촌지도자회원으로 자긍심 고취와 위상 제고
- * 더 행복한 농촌, 생명산업 농업, 하나 된 농촌지도자회

○ 사업 위치 : 천안 상록리조트(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 사업 기간 : 2020. 10. 29. ~ 2020. 10. 31.(신규사업)

○ 예산액 : 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연기로 사업비 전액 반납

○ 사업량 :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촌지도자충청남도연합회,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공식행사) 대회식, 비전실천 퍼포먼스, 환영리셉션, 폐막식, (학술행사) 토론회/심포지엄 (전시홍보) 농특산물, 농업기술 및 정책홍보관, (체험판매) 청년창업상품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1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

1.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 대회 개최지원 : 0천원 ○ 행사 연기로 인한 사업비 전액 반납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700,000	0	△70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0		500,000	0	△500,000		
시군비	0		200,000	0	△20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71%, 시군비 2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2019.9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단체협력팀	이홍복 (6130)	허종행 (6141)	유상영 (6142)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단체 행사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보조 (307-04)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품목농업인연구회의 활동성과 평가와 정보 등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단체)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 10,000)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해외연수 사업비 반납
- 사 업 량 : 1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 사업 내용 : 우수성과 발굴 및 활류를 위한 활동성과보고회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1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

1.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성과 보고회 : 10,000천원 ○ 10,000천원 × 1회 = 10,000천원 ■ 품목농업인연구회 국제마인드 향양 국외연수 : 0천원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0	40,000	10,000	△30,000	0	
국 비	0				0		
도 비	10,000		40,000	10,000	△3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8,000	38,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단체협력팀	이홍복 (6130)	허종행 (6141)	유상영 (6142)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행사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활개선회원의 전문능력 배양 및 조직활성화
 - 농촌의 새로운 가치활용에 대한 기술 및 우수사례 공유로 전문능력 향상
- 사업 위치 : 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39,800천원(도비 39,800)**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해외연수 사업비 반납
- 사 업 량 : 2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민간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
- 사업 내용 : 농촌 여성지도자 우수사례 실적발표, 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 우수사례 공유
- 지원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 제12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 영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 실적발표회 : 11,000천원 ○ 11,000천원 × 1회 = 11,000천원 ■ 생활개선충청남도연합회 우수사례 공유 : 28,800천원 ○ 28,800천원 × 1회 = 28,800천원 ■ 생활개선회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 0천원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9,800	0	65,000	39,800	△25,200	0	
국 비	0				0		
도 비	39,800		65,000	39,800	△25,2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6,700	56,7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단체협력팀	이홍복 (6130)	허종행 (6141)	유상영 (6142)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육성
	통 계 목	행사실비지원금(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산업 발전과 지역공동체 문화계승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이끌고 갈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경영기술 습득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1,340천원**(도비 1,340)
- ※ 감액 사유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청년농업인 품목별 분과 현장 집합교육 활동 축소
- 사 업 량 : 7개회 152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청년농업인 품목별 그룹조직 및 현장중심의 분야별 전문교육 추진
 - 품목별 최고 전문가 현장방문 노하우 습득, 전문경영 기술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개최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8조 제1항(지원대상)

1.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행사실비 : 1,340천원 ○ 식 비 : 8,000원 × 152명 × 1식 = 1,216천원 ○ 간식비 : 17,700원 × 7개회 × 1회 = 12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340	0	4,340	1,340	△3,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1,340		4,340	1,340	△3,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	4,5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이홍복 (행) 6130	박재진 (행) 6151	김슬기 (행) 6152

4-H 학습단체 행사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 및 학생4-H회 활동지원과 4-H지도자 육성을 통한 4-H활동 활성화 및 수요에 맞는 자율적 활동 지원 확대와 주관단체 자립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사)충청남도4-H본부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57,000천원**(도비 57,000)
- ※ 증감 사유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학생 등 대규모 밀집행사 취소 및 제한범위내 축소 운영(3종)
- 사 업 량 : 4종(비대면 온라인 교육 가능사업변경 추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4-H 본부
- 사업 내용 : 충남 4-H 에듀케이션, 4-H본부 역량강화 교육, 충남 학생 4-H 과제경진대회, 4-H 대상 시상식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8조 제1항(지원대상)

1.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4-H 에듀케이션 : 13,000천원 × 1회 = 13,000천원 ■ 4-H본부 역량강화 교육 : 6,500천원 × 2회 = 13,000천원 ■ 학생4-H과제경진대회 : 11,000천원 × 1회 = 11,000천원 ■ 충청남도4-H대상 시상식 : 20,000천원 × 1회 =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9,600	0	162,600	99,600	△63,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57,000		120,000	57,000	△63,000		
시군비	0				0		
기 타	42,600		42,600	42,600	0		

* 보조율 : 도비 57%, 자담 4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17,800	117,8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이홍복 (행) 6130	박재진 (행) 6151	김슬기 (행) 6152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국제농업 흐름, 선진농업 신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농업전문 교육
- 세계적인 농업기술교육기관의 전문 트레이닝으로 선진 농업경영 노하우 습득 영농기술 실천

○ 사업 위치 :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해외 집합교육 추진 불가

○ 사 업 량 : 28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선진농업국 영농기술센터 위탁교육

- 시설원예, 과수, 축산, 특작 등 선진농업기술 실습형 교육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1.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 0천원 ○ 해외교육 불가로 인한 사업비 전액 반납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146,000	0	△146,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0		21,900	0	△21,900		
시군비	0		51,100	0	△51,100		
기 타	0		73,000	0	△73,000		

* 보조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1,000	21,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이홍복 (행) 6130	박재진 (행) 6151	김슬기 (행) 615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도운영)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
- 사업 위치 : 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12,000천원(국비 6,000 도비 6,000)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면접평가 시군별 추진, 집합교육 및 대면 컨설팅 추진 불가
- 사 업 량 : 2건(선발자 교육, 성과사례집 제작)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청년 창업농 지원 수혜자 교육 및 간담회(1회), 우수정착 사례집 제작(1회)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 선발 및 운영관리 : 12,000천원 ○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7,100천원 × 1회 = 7,100천원 ○ 사례집 제작 : 7,000원 × 700부 = 4,9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2,000	0	24,000	12,000	△12,000	0	계속
국 비	6,000		12,000	6,000	△6,000		
도 비	6,000		12,000	6,000	△6,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4,000	24,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이홍복 (행) 6130	박재진 (행) 6151	김슬기 (행) 6152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도,시군) (성립전)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통 계 목	인건비101-04) 사무관리비(201-01) 지방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창출
- 사업 위치 : 도, 시군
- 사업 기간 : 2020. 7.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74,200천원(국비 134,000 도비 40,200)
 - ※ 증감 사유 : 정부3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사용
- 사 업 량 : 20명(기간제근로자 고용, 사무보조)
- 사업시행방법 : 도직접수행 및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지역특화작목 중심 비대면 기술보급 업무 추진 지원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 45조, 농촌진흥법 제 1조, 제 15조, 제2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도) : 80,400천원 ○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인건비) : 1,961천원×6명×5개월 ≒ 58,840천원 ○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무관리비) : 719천원×6명×5개월 ≒ 21,560천원 ■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시군) : 938,000천원 ○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자치단체경상보조) : 13,400천원×14명×50% = 93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68,000	0		268,000	268,000	0	계속
국 비	134,000			134,000	134,000		
도 비	40,200			40,200	40,200		
시군비	93,800			93,800	93,8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기획홍보팀	이홍복 (행) 6130	서동철 (행) 6134	이지수 (행) 6135

충남생활원예경진대회 및 생활원예교육	정책사업	첨단농업기술개발 보급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	다원적 부가가치 실용기술 보급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활원예 저변확대 및 화훼류 소비촉진을 통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및 내방객을 통한 원예교육 홍보
- 사업 위치 : 충남농업기술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15,000천원(도비 15,000)**
 - ※ 증감 사유 :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 축소 추진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 사업 내용 : 세계군문화엑스포 아이디어정원 15, 접시정원 15 및 원예교육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 및 19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생활원예경진대회 및 생활원예교육 ○ 행사운영비 : 15,000천원 · 제14회 충남생활원예경진 행사장 조성 -(심사수당)250천원×4명=1,000천원 -(경진대회물품구입)30천원×5종×30개=4,500천원 -(전시연출 및 전시장 기반조성)1,000천원×8종=8,000천원 -(작품설명)50천원×30종=1,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5,000	0	45,000	15,000	△30,000	0	
국 비	0				0		
도 비	15,000		45000	15000	△3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10,530	10,53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농업안전팀	최계찬 (행) 6180	신동진 (행) 6181	이도연 (행) 6183

농촌자원사업 육성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촌생활 자원개발 지원
	세부사업	건강한 농촌생활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자원사업의 활성화 및 안전한 농작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100천원(도비 10,100)**
 - ※ 증감 사유 :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및 서면 교육·행사 대체 추진
- 사 업 량 : 농촌자원사업 업무협의회 1회, 농촌자원사업 현장연찬회 1회,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 1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농촌자원사업 업무협의회 등 교재 및 리플릿 제작, 임차료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 제25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16조

농촌진흥법 제16조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 제25조

-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촌자원사업 육성지원(사무관리비 201-01) : 5,300천원 ○ 농촌자원사업 업무협의회 : 1,210천원 - 교재제작 : 15,000원 × 60부 = 900천원 - 강 사 료 : 250,000원 × 1명 = 250천원 - 현 수 막 : 60,000원 × 1매 = 60천원 ○ 농촌자원사업 현장연찬회 : 2,630천원 - 교재제작 : 15,000원 × 60부 = 900천원 - 임 차 료 : 750,000원 × 2일 = 1,500천원 - 현 수 막 : 60,000원 × 2매 = 120천원 - 진행물품(POP, 볼펜 등) : 110,000원 × 1건 = 110천원 ○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 : 1,460천원 - 교재제작 : 15,000원 × 60부 = 900천원 - 강 사 료 : 250,000원 × 2명 = 500천원 - 현 수 막 : 60,000원 × 1매 = 60천원 ■ 농촌자원사업 활성화 지원(행사운영비 201-03) : 4,000천원 ○ 농작업 안전 경진대회 : 1,990천원 - 현 수 막 : 120,000원 × 1매 = 120천원 - 전 시 대 : 60,000원 × 30m = 1,800천원 - 진행물품(테이프, 릴선, 볼펜 등) : 70,000원 × 1건 = 70천원 ○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세미나 : 1,130천원 - 강 사 비 : 500,000원 × 2명 = 1,000천원 - 현 수 막 : 60,000원 × 1매 = 60천원 - 진행물품(POP, 볼펜 등) : 70,000원 × 1건 = 70천원 ○ 농작업 안전교육 : 880천원 - 교재제작 : 20,000원 × 25부 = 500천원 - 강 사 료 : 250,000원 × 1명 = 250천원 - 현 수 막 : 60,000원 × 1매 = 60천원 - 진행물품(POP, 볼펜 등) : 70,000원 × 1건 = 70천원 ■ 농촌자원사업 지원(행사실비지원금 301-09) : 800천원 ○ 농촌자원분야 분야별 체험·가공 등 교육 : (급량비) 8,000원 × 100명 = 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100	0	17,100	10,100	△7,000	0	
국 비	0				0		
도 비	10,100		17,100	10,100	△7,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800	7,791	9	9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농업안전팀	최계찬 (행) 6180	신동진 (행) 6181	장정식 (행) 6182

충남농촌체험학습 홍보전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생활 자원개발지원
	세부사업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진로체험과 연계된 창의적 농촌체험학습장의 프로그램을 초·중·고 학생 및 도·시민에 소개함으로 체험객 및 농촌 방문객 증대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홍보전 시군별 자체 추진
- 사 업 량 : 농촌체험학습 홍보전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농촌체험학습 체험관, 팜파티관, 우수 프로그램 시상 등
- 지원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농촌체험학습 홍보전 ▶ 코로나 19 대응하여 시군별 자체 추진에 따라 전액삭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31,500	0	△31,500	0	
국 비	0				0		
도 비	0		31,500	0	△31,5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5,000	35,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생활농업팀	최계찬 (행) 6180	곽현정 (행) 6185	박영수 (행) 6186

해외전문가 초청 첨단농업기술교육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세부사업	실용농업인교육
	통 계 목	외빈초청여비(301-07),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스마트팜 확산에 대응한 농업선진국 실용화 기술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국제 경쟁력제고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및 영농현장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0원(도비 44,500천원 전액 감)
- ※ 증감 사유 : 코로나 19 역유입 방지 및 해외입국자 방역강화로 인한 사업취소
- 사 업 량 : 2과정 500명(과정별 250명, 과정당 3일간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네덜란드 등 스마트팜 관련 해외전문가 초청 교육 및 현장컨설팅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20, 28조
「충남 농촌지도 비전 2030」, 국정과제(스마트팜확산 대응)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8조의 2
20조 (농어촌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8조의 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농어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해외전문가 초청 첨단기술교육 (201-03) 35,000천원 ○ 강사수당 : 15,321,600원(240€×24H×1,330원×2회) ○ 통역수당 : 4,200,000원(700,000원×6일) ○ 교재제작비 : 9,000,000원(15,000원×300부×2종) ○ 현장컨설팅 임차료 : 6,000,000원(500,000원×6대×2회) ○ 기타 운영경비(사무용품 등) : 478,400원 ■ 해외전문가 초청 첨단농업기술교육 초청여비(301-07) 5,000천원 ○ 강사 항공료 : 1,840,000원(920,000원×2회 / 편도, 경상도와 연계 추진) ○ 강사통역식비 : 1,560,000원(30,000원×12식×2명×2회) ○ 강사통역 숙박비 : 1,600,000원(100,000원×4박×2명×2회) ■ 해외전문가 초청 첨단기술교육 참석자 급식 등 (301-09) 4,500천원 ○ 교육생 중식비 및 다과비 : 9,000원×250명×2회 = 4,500,000원	44,500천원 전액감액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44,500	0	△44,500	0	
국 비	0				0		
도 비	0		44,500	0	△44,5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9,200	39,104	96	9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전문교육팀	김병만 (행) 6200	구동관 (행) 6201	이신복 (행) 6203

전문 농업인교육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세부사업	전문농업인 교육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재료비(206-01) 행사실비지원금(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 신기술교육을 통한 농가 재배기술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기여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교육관 및 영농현장
- 사업 기간 : 2020. 1~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7,075천원(도비 16,000천원 감)**
※ 증감 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교육과정 축소에 따른 미집행 예상액
- 사 업 량 : 65과정 2,00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농업인 대상 전문농업기술교육 및 공모, 현장교육 등
- 지원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제21조,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충남 농촌지도 비전 2030」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업인교육 운영(201-01) : 68,250천원 ○ 농업인교육 운영비 · 강사료 : 43,800천원(730천원x60회) · 원고료 : 5,900천원(100천원x59회) · 교재비 : 15,600천원(260천원x60회) · 사무용품비 : 2,950천원(50천원x59회) ■ 농업인교육 실습재료 구입(206-01) : 5,025천원 ○ 자격증반 재료비 : 5,025천원 · 화훼장식기능사 과정 재료비 : 2,475천원(2,475천원x1과정) · 종자기능사 등 3과정 재료비 : 2,550천원(850천원x3과정) ■ 농업인 교육생 급식(301-09) : 13,800천원 ○ 급식비 : 8,400천원(5천원x1,680명) ○ 다과비 : 5,400천원(3천원x1,800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87,075	0	103,075	87,075	△16,000	0	
국 비	0				0		
도 비	87,075		103,075	87,075	△16,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2,600	102,335	265	99.7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실용교육팀	김병만 (행) 6200	이강철 (행) 6205	이보영 (행) 6206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세부사업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재료비(206-01) 행사실비지원금(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스마트팜 도입 농업인에 대한 활용기술 교육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양성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교육관 및 영농현장
- 사업 기간 : 2020. 1~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7,794천원(도비 1,000천원 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교육과정 축소에 따른 미집행 예상액
- 사 업 량 : 10과정 23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스마트팜 활용기술 기초교육, 양액재배 기초 기술 교육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제21조,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충남 농촌지도 비전 2030」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운영(201-01) : 12,600천원 ○ 농업인교육 운영비 · 강사료 : 8,000천원(800천원x10회) · 교재비 : 2,700천원(270천원x10회) · 원고료 : 1,200천원(120천원x10회) · 사무용품비 등 : 700천원(70천원x10회) ■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실습재료 구입(206-01) : 2,800천원 ○ 기초기술과정 : 1,300천원(162천원x8과정) ○ 모형제작과정 : 1,500천원(750천원x2과정) ■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생 급식(301-09) : 2,394천원 ○ 급식비 : 1,840천원(8천원x230명) ○ 다과비 : 554천원(2.4천원x230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7,794	0	18,794	17,794	△1,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7,794		18,794	17,794	△1,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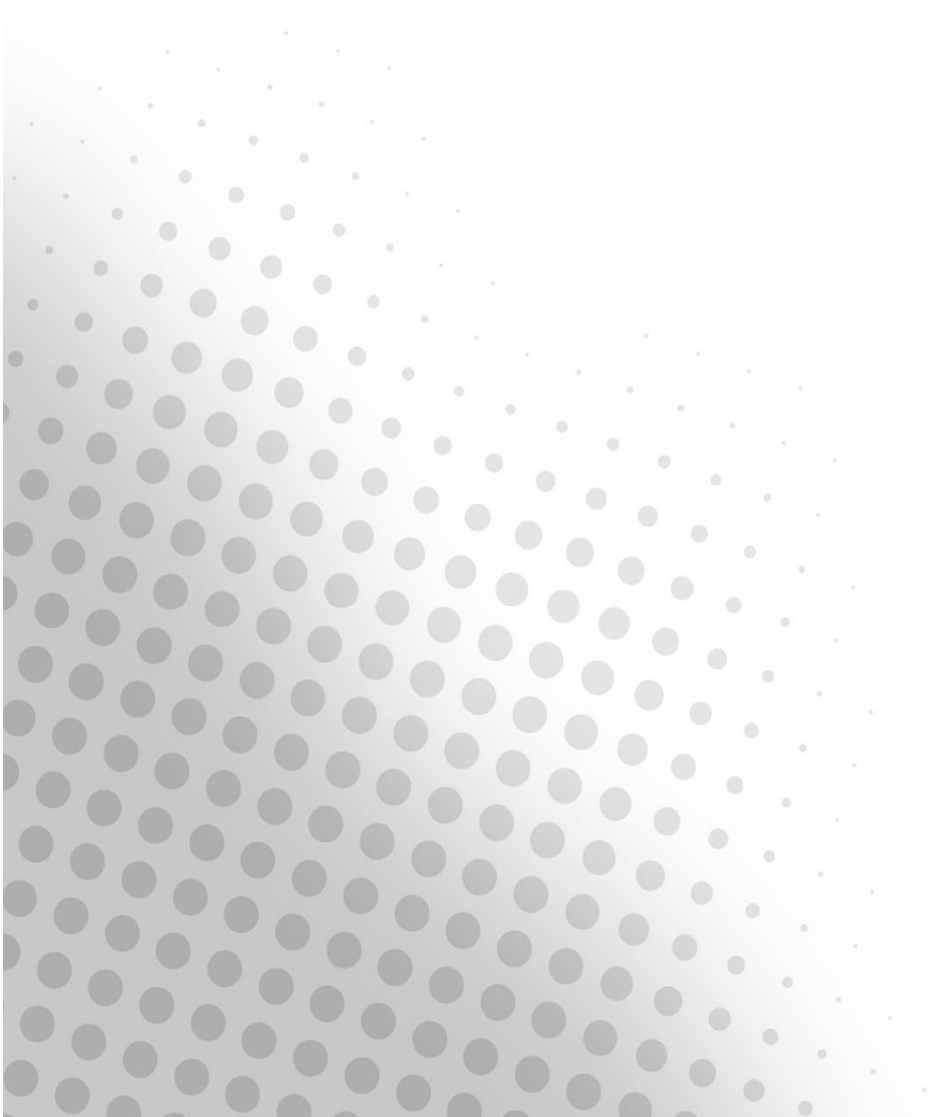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실용교육팀	김병만 (행) 6200	이강철 (행) 6205	이보영 (행) 6206

연구소·관리소



연구소·관리소

1.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 75
2. 화훼 신품종 육성 78
3. 관상국화연합회 전시회 지원 81
4. 우량잠종 생산 보급 및 연구활동 지원 83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일등품질 딸기 생산기술·연구활동 육성
	단위사업	경쟁력 있는 딸기산업 육성
	세부사업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딸기 산업을 이끌 전문농업인 육성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 사업 기간 : 2020. 1. 1~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비 0)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운영 취소

- 사 업 량 : 딸기산업을 이끌 리더 양성 및 전문 농업인 육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 사 업 내 용

〈딸기 재배기술 세미나 및 발전 협의회〉

- 딸기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
- 딸기산업 발전방안 협의 등

○ 지 원 근 거 : 농촌진흥법 21조

농촌진흥법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딸기산업 경쟁력 강화 ○ 사무관리비 0천원(전액반납) 〈딸기 전문농업인 육성 등〉 · 책자 인쇄 10천원×0명 = 0천원 · 딸기 재배기술 리플렛 제작 5천원×0명 = 0천원 ○ 행사운영비 0천원(전액반납) 〈딸기 전문가 세미나 운영 등〉 · 강사료 및 실비보상 360천원×0인 = 0천원 · 다과비 2천원×0명 = 0천원 ○ 행사실비지원금 0천원(전액반납) 〈딸기산업 발전 협의회, 세미나 등〉 · 참석자 급식비 8천원×630인×0회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 (B)	증감(A-B)		
계	0		18,180	0	△18,180		신규
국 비	0						
도 비	0		18,180	0	△18,18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 장	팀 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	육종팀	이병주 (행) 6340	김현숙 (행) 6343	이희철 (행) 6344

화훼 신품종 육성	정책사업	일등품질 화훼생산기술, 연구활동육성
	단위사업	경쟁력있는 화훼산업 육성
	세부사업	화훼 신품종 육성
	통 계 목	인건비(101-04)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시험연구비(2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UPOV 및 기후변화 대응 국화, 백합, 프리지어 등 신품종 개발 및 품종보호 출원
- 사업 위치 : 충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42,730천원(도비 442,730)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화훼전시관 운영 취소

- 사 업 량 : 인건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 사 업 내 용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및 16조

농촌진흥법 제2조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화훼 신품종 육성 : 550,830천원 ○ 인건비: 160,000천원 ◦ 인건비: 8,590원×8시간×26일×8명×8개월= 114,350천원 ◦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8,850천원 ◦ 처우개선비 - 정기상여금(분기별 지급, 연 4회): 200,000원×8명×3회=4,800천원 - 명절상여금: 200,000원×8명×2회=3,200천원 - 교통비: 50,000원×8명×8개월=3,200천원 - 급량비: 130,000원×8명×8개월=8,320천원 - 수 당: 270,000원×8명×8개월=17,280천원 ○ 사무관리비 : 4,000천원 ◦ 신품종 해외출원료 - 출원 신품종 유지비용 : 4,000천원 ○ 공공운영비(온실연료비) : 150,480천원 ◦ 경유구입 : 150,480 - 경유 2391.6ℓ/일 × 52일 × 1,210원 =150,480천원 ○ 연구개발비(시험연구비) : 114,000천원 ◦ 시험연구재료: 85,500천원 - 육묘 및 재배용 상토 및 포트 : 45,000천원 - 퇴비 및 비료 : 15,000천원 - 농약 및 생장조정제 : 16,000천원 - 점적호스 및 네트 등 : 9,500천원 ◦ 화훼바이러스 검정 : 28,500천원 - 추출용 호젠바이오 DNA, RNA 키트(50개=120천원) : 6,000천원 - NG노믹스 원수팩 RT PCR (50개=100천원) : 5,000천원 - 2차 증폭용 투엑스 다이믹스(50개=100천원) : 4,000천원 - 아가로스 45G : 5,000천원 - 로딩스타(유전물질 발생, 4ml병 1,000천원) : 5,000천원 - 기타 시약 및 초자기구 : 3,500천원 ○ 화훼신품종 전시관 운영(사무관리비) : 5,400천원 ⇒ 0원(전액 반납) ○ 화훼신품종 전시관 운영(행사운영비) : 2,700천원 ⇒ 0원(전액 반납) ○ 신소득 화훼류 유전자원포 조성 재료 구입 : 14,2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A-B)		
계	442,730		450,830	442,730	△8,100		계속
국 비	0						
도 비	442,730		450,830	442,730	△8,10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33,560	431,765	1,795	99.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숙 근 팀	함인기 (행) 6400	박하승 (행) 6404	조은아 (행) 6408

관상국화연합회 전시회 지원	정책사업	일등품질 화훼생산기술, 연구활동육성
	단위사업	경쟁력있는 화훼산업육성
	세부사업	학술회의 참석 및 선진농장 견학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내 관상국화 중심지 육성 및 신 소득사업화 연계로 경쟁력 강화
- 사업 위치 : 충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원(도비 0)
-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관상국화연합회 전시회 취소
- 사 업 량 : 13개 시·군 회원 497명, 연합전시회 1회, 세미나 2회, 월례회 8회 개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 사업 내용 : 화훼신품종 육성 보급 및 국화산업 활성화
- 지원 근거 : 농촌진흥법 제3조(지방농촌기관), 제13조(국가재정적지원)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관상국화연합회 전시회 지원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8,100	0	△8,100		계속
국 비	0						
도 비	0		8,100	0	△8,10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100	8,096	4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속근팀	함인기 (행) 6400	박하승 (행) 6404	이영혜 (행) 6407

우량잠종 생산 보급 및 연구활동 지원	정책사업	잠사곤충 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우량잠종 육성 및 유용곤충연구
	세부사업	우량잠종 생산 보급 및 연구활동 지원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재료비(206-01) 행사실비지원금(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우량 잠종생산·공급 및 양잠·산업곤충 사육농가 소득 향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87,450천원(도비 287,450)
-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실비지원금 사용잔액 반납
- 사 업 량 : 우량잠종 및 뽕나무 15개 시·군 보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 사업 내용 : 누에씨 생산보급 및 뽕밭관리, 뽕나무(일반,오디) 관련 연구사업 수행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및 16조

농촌진흥법 제2조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10,000천원 ○ 잠종생산, 산업곤충연구 인부임 : 210,000천원 · 보수 : 8,590원×8시간×27일×8개월×10명 = 148,435천원 · 4대보험 : 300천원/월×8개월×10명 = 24,000천원 · 교통비·급량비·생활임금보전수당 : 220천원×8개월×10명 = 17,600천원 · 상여금 : 800천원×10명 = 8,000천원 · 초과근무수당 등 기타수당 : 149,560원×8개월×10명 = 11,965천원 ■ 사무관리비 : 3,150천원 ○ 포크레인 임차 : 3,150천원 · 뽕밭관리 등 포크레인 임차 : 525천원×6회 = 3,150천원 ■ 공공운영비 : 31,000천원 ○ 농기계 및 장비 등 수리수선 : 31,000천원 · 농기계 및 시험장비 유지보수 및 수선 : 1,000천원×16회 = 16,000천원 · 잠실, 곤충온실하우스 등 수리수선 : 1,000천원×9회 = 9,000천원 · 농기계 및 잠실 운영 유류 구입 : 1,000천원×6회 = 6,000천원 ■ 재료비 : 45,000천원 ○ 퇴비구입 : 8,400천원 · 퇴비(600kg/1포) 105천원/1포×80포 = 8,400천원 ○ 비료구입 : 9,750천원 · 복합비료 650포×15천원 = 9,750천원 ○ 농약구입 : 6,250천원 ·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25종×25천원×10병 = 6,250천원 ○ 연구실 안전관리 재료 구입 : 2,100천원 · 안전관리 용품 10종×210천원× = 2,100천원 ○ 잠종제조 재료 구입 : 13,850천원 · 잠실 소독용품 등 45종×40천원×5개 = 9,000천원 · 초자 기구 및 잠구류 구입 19,400원×10종×25개 = 4,850천원 ○ 실생묘 구입 : 2,400천원 · 뽕나무 갱신용 실생묘 구입 : 4,000주×600원 = 2,400천원 ■ 행사실비지원금 : 1,350천원 ⇒ 550천원(800천원 반납) ○ 급량비 : 1,350천원 ⇒ 550천원(800천원 반납) · 양잠·오디 농가 69명×8천원×1회 = 550천원 · 품잠기원제 개최 100명×8천원×1회 = 800천원(전액 반납)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87,450	0	288,250	287,450	△8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287,450		288,250	287,450	△8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207,696	207,607	89	99.96%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잠업곤충팀	남윤규 (행) 6320	최문태 (행) 6328	조호려 (행) 6323

